

통일부고시 제2023-159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통일부 장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 고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

I 개요

1 정의 및 근거

- (정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의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
 - △남북관계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남북관계발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근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
 -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2 수립 의의

○ 중장기 비전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대북정책 추진

-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장기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을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통일·대북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적 합의 형성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참여, 국회 보고 및 대국민 고시 등의 절차를 통해 통일·대북정책 수립·추진의 투명성 제고

* 민간위원(△국회 10인 △시도지사協 1인 △통일부장관 4인 추천), 정부위원과 동수(15:15)로 구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

○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정합성 및 효율성 확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참여하에 통일·대북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 추진 체계의 정합성 확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통일·대북정책 관련 사업을 종합·조정하여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실효성·효율성 제고

○ 남북 간 협력의 기반 마련 및 신뢰 제고

- 남북관계 발전의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북한의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 지지를 바탕으로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 및 합의사항의 이행력 제고

3 수립 경과

○ 기본계획(안) 마련 ('23. 4.)

- 남북관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계획 심의·확정 ('23. 11.)

- 실무위원회 사전 검토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 국회 보고 및 고시 ('23. 11.)

-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관보 게재)

II

제4차 기본계획 수립환경

1

남북관계 현황

□ 윤석열 정부 출범,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담대한 구상」 제시

- 북핵문제 당사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인 「담대한 구상」을 마련·제안('22.8.15. 광복절 경축사)

* 「담대한 구상」 초기조치 및 5대 사업

- 초기조치 :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 5대 사업 :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 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금융지원 프로그램

- 국제사회 및 우리 국민의 이해 제고와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 전개

○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올바른 남북관계 재정립 추진

- 「국가안보전략」('23.6.) 및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22.11.)을 통해 통일·대북정책의 추진원칙과 추진과제를 제시

*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22.11.)

- (3대 원칙) 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 (5대 추진과제) 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②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③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④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

- *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한 제재·압박 경고' 등 강력 대응 △통신선 불응, 개성공단 무단기동 관련 통일부장관 성명('23.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23.6.) 등

- 동시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

○ 북한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여건 개선 적극 노력

- 북한 인권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대내외 협력 추진
- *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23.3.) 등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 강화 △「북한인권증진 위원회」 구성·운영('23.3.~) 등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노력 추진
- △코로나19 관련 방역 협력 실무접촉('22.5.) △이산가족 관련 당국 회담 ('22.9.) 등 공식 제안

□ 北, '강대강, 정면돌파' 기조하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해 강경·적대노선 지속

○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적대적 태도 노골화

- '22년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전술 핵탄두 공개('23.3.) 등 핵무기 능력 고도화
- '23년 들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4회 개최(2·3·4·8월), '군사적 공세를 위한 전쟁준비태세' 등 위협('23.8.)

○ 내부적으로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체제 안정과 내부 결속에 집중

- 제재 장기화 및 국경폐쇄 등으로 경제난·식량난 지속
- 사상무장을 강조하며 내부 기강 확립 및 민심 단속 노력

○ 대중·대러 밀착행보를 지속하는 한편, 무역은 회복세

- 중국·러시아와는 상호 핵심 이슈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고위급 교류, 축전·지지 담화 발표 등 연대 지속
- 북중 무역은 코로나19 봉쇄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 수출입 모두 증가세
- * 1~8월 북중 누적 무역액(해관통계)은 14.3억 달러, 코로나 이전의 83.6% 수준 회복

2

국제사회 동향

- 미·중 전략 경쟁 속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자국 중심주의 강화 및 국제질서 재편을 가속화
 - 에너지·식량 확보, 공급망 재편 및 첨단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국 이익에 따른 대립·협력 관계가 혼재, 국제정세 불안정성 가중
 - 동북아에서도 미·중 대결 구도를 기본 축으로 각국의 경제·안보 이해관계가 어우러지면서 지정학적 경쟁 및 진영화 추세 심화
- 미국은 미·중 경쟁 대응, 경제안보 강화, 공급망 재편 등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연대 강화 추진
 - 인·태전략('22.2.) 관련 역내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진
-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 기조 아래 쿼드(Quad)*,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등을 통해 지역 내 영향력 확대 노력 지속
 - *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회담
- 중국은 자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경제 통합 및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북한 등 우방과의 연대 강화
 -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 및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에 국가 역량을 집중, 개도국을 중심으로 중국식 국제질서 담론 확산 시도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22.2.)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속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중도 성향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대 모색
- 보건안보, 기후변화·환경파괴,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등 신종안보 위협의 증가로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 증대

비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목표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정상화

- ①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 ②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 ③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추진원칙

- 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 ②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 ③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중점
추진과제

- ①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 ②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 ③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 ④ 북한 정보분석 강화
- ⑤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1

비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것

* 「대한민국 헌법」(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내실 있는 준비

2

목표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정상화

□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번영 구현
 -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 △제재·압박을 통한 핵개발 단념(Dissuasion) 유도 △대화를 통한 비핵화 추진(Dialogue) 등 3D 전략의 총체적 접근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환경 조성
 -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시 민생 개선과 신뢰 조성을 위한 과감한 초기 조치를 추진, 본격적인 협상 동력 마련

- △비핵화 협상 진행 시 '포괄적 합의' 도출 △이를 토대로 '실질적 비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신속한 비핵화 추진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의 동시적·단계적 이행 추진

□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에 기반한 남북관계 추진
 -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 잘못된 관행 등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
 -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하는 당당하고 원칙 있는 대북 관여 추진

□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 구축
 - 통일의 청사진을 담은 새로운 통일미래비전을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
 - 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2030세대와 함께하는 통일미래상을 추구하며 국민적 통일 의지·역량 강화
 - 국제사회와의 다차원적 협력을 지속 전개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용
-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단호히 대응
-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도 지속

□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 남북 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구조'의 정착 추진
-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남북 상호 관심사 및 차이도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 질서 확립

□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 헌법 제4조가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
-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통한 통일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
 - 국내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차근차근 조성

< 목 표 >

-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능동적으로 추진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실질적 평화정착 노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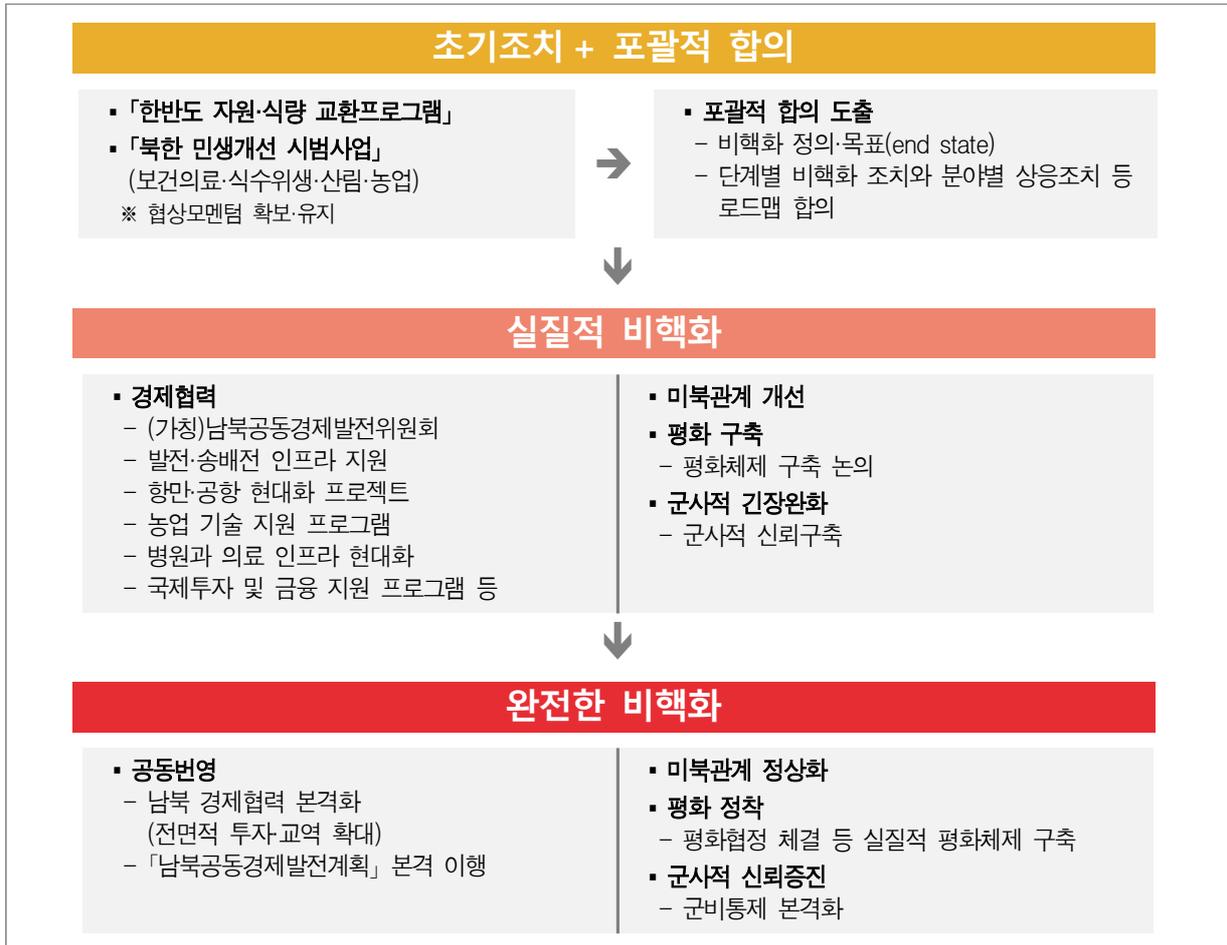
○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 이행 방안 마련
- △北 비핵화 협상 복귀 시 민생개선 사업 중심 초기조치 이행 △남북 간 비핵화 로드맵 마련 이후, 北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 분야 상응 조치의 동시적·단계적 추진

○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 북한의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무역 등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정부부처·민관 간 협력 확대

< 비핵·평화변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



○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 우방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체제 및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유지
-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도 병행
- 국제사회와 공조하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북한의 국제 경제체제 편입 지원을 위한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2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 목 표 >

-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
-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

-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하고 재발 방지를 당당하게 요구
-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 하는 구조 정착

*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 구성·운영 합의 추진

○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 북한이 원하는 의제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와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도 균형 있게 협의
-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미세먼지·자연재난·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남북 간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조성 및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 담대한 구상과 연계하여 △산림·식수·위생분야 협력 → △마을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 →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법령 및 제도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
- 민간단체·경협기업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 역사·예술·문화·종교·체육 등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인적 교류와 협력사업 지속 지원
 -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발굴 등 민간교류 사업은 국민들이 체감·활용할 수 있는 전시·체험 사업 위주로 운영
- * 전자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디지털 복원사업 등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 목 표 >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 국회(야당)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추진
- 시민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내실화
-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실시
- 북한인권 논의 동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북한인권재단

- (근거) 북한인권법 제10조~제12조
- (기능) △북한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 남북대화 시 이산가족 전원 생사확인 및 상봉 정례화 등 추진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향후 교류에 대비
-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개최 등 국민 공감대 확산 활동 전개

* 「이산가족법」 개정('23.3.28.), 이산가족의 날(매년 추석 전전날) 법정기념일 지정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설치, 지속적·체계적 대응 추진
- 남북대화 시 공식 의제화, 생사확인·송환 등 추진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북한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며, 취약계층 우선, 투명성 확보 등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투명성 제고 노력
- 북한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 검토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맞춤형 일자리 지원 △교육지원 △법률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의 안정적 자립을 제도적으로 지원
- 탈북민의 전문직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취약계층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별 통합안전지원 △심리·정서안정 지원 등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확대
- 복지 사각지대 우려 탈북민 대상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체계적 위기관리 추진
- 탈북민에게 포용적인 통합지향형 사회 환경 조성 추진

4

북한 정보분석 강화

< 목 표 >

- 정보분석 역량 강화
- 북한 정보분석 네트워크 정비
-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 정보분석 역량 강화

- 주요 정치행사, 군사도발 등 계기 시 신속한 분석·보고체계 마련
- 정치·군사·대남·대외 등 분야별 심층 분석을 토대로 기획보고 활성화
- 북한 경제 실상 및 동향 파악을 위한 객관적 지표 개발·적용
- 위성영상 수집 분석 등 적시적·효율적 분석체계 구축

○ 북한 정보분석 네트워크 정비

- 국내외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및 연계 강화
- * 국내외 정보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NGO 등
- 유관기관 간 상시적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강화

○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 빅데이터 기반 「북한정보포털」 개편 추진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추진('26년 초 개관)
-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사업 공개 보고서」 발간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 목 표 >

- 새로운 통일미래비전 정립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새로운 통일미래비전 정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대북 정책의 방향* 모색

*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통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구축 지향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중심으로 국민·국제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방안을 마련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통일부장관 직속 민간자문기구, 각계 권위 있는 전문가 35명 이내로 구성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국내외 환경변화 및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적 계승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 통일준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통일기반조성기본법」 제정 추진

- 국민이 기탁한 민간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함으로써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추진

○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 자문회의 운영, 다양한 북한 실상 콘텐츠 제작, 남북한 공통지표 개발 등 북한이해 제고 기반 확충
- 통일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강연회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북한실상 전파
- 유관단체 협조·지원 및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북한실상 인식 공유

○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 미래세대 특성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VR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활용
- '통일문화행사', '통일교육주간' 등을 활용한 참여·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국민적 합의형성 사업 추진
- 권역별 「통일+센터」 단계적 확대 설치를 통해 지역사회 내 통일 거버넌스 구축

* △('23년) 호남권 통일+센터(목포) → △('24년) 강원권 통일+센터(춘천) → △('25년) 경기권(의정부)·충청권 통일+센터(내포신도시)

○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 및 다양한 다자·양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주변국뿐 아니라 EU·아세안 등으로 협력 범위 확장 및 협력분야 다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심화·발전

V

추진체계, 근거법령 및 소요자원 조달

1

추진 체계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 (목적)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 (구성) 위원장(통일부장관)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통일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정부위원 : △통일부장관(1)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당연직 10 + 지정직 4)

- 당연직(10) : 기획재정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차관, 국가정보원 차장
- 지정직(4) :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 (민간위원) △국회의장(10) △시도지사協(1) △위원장(통일부장관)(4) 추천*

*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통일부장관)이 위촉(임기 2년)

○ (운영) 위원장(통일부장관)이 위원회 소집(서면통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으로 실무위원회(위원장: 통일부차관) 구성·운영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시행령 제11조)

- (목적)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위원회 위임사무 등의 심의
- (구성) 위원장(통일부차관)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관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중 각 1인)으로 구성
- (심의사항) △위원회 심의사항 사전 검토 △위원회 위임사무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부의 사항

○ 심의사항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남북관계발전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한반도 평화증진(6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7조), 민족동질성 회복(8조), 인도적문제 해결(9조), 북한에 대한 지원(10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11조), 재정상의 책무(12조) 등
- 남북관계 발전 관련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 제·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 교류·협력, 남북 관계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조·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아울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해 3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 △이행되지 않은 사업의 사유, 대책을 추진실적에 포함 △통일부장관은 점검 후 30일 안에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
 - * △기본계획 등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2

근거 법령

○ 「남북관계발전법」·「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집행의 근거 법률은 「남북관계발전법」·「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등이 대표적이며, 분야별로 각 개별법에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을 규율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개정·폐지 관련 사항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3

소요자원 조달

○ 남북협력기금 및 중앙행정기관 일반예산 등

- 집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및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에서 조달하되, 민간·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조달방안 강구
-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남북사회문화교류 등 분야에 1조 2,101억 원 편성

○ 남북협력기금 범위 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남북협력기금 등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시 재정당국과 협의 하에 정부 재정 건전성 유지, 기타 재정적 소요를 감안하여 시행계획 수립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I 개요

1 관련 규정

-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남북관계발전법」 제13조 제4항)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5개년 계획

-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관보에 게재

*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 단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2

수립 경과

○ 시행계획(안) 마련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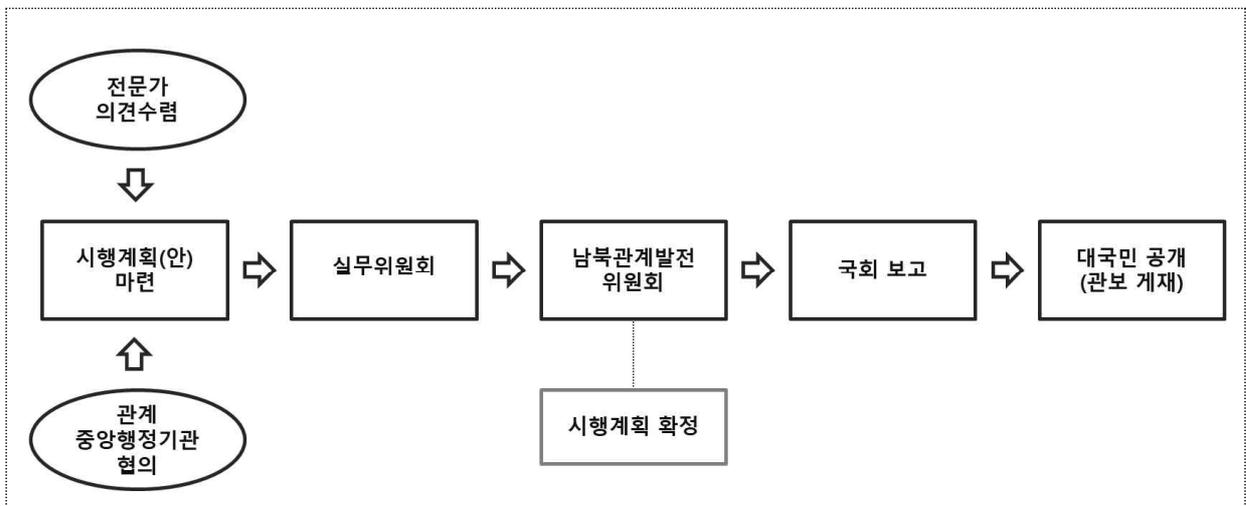
- 통일부는 남북관계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3년도 시행계획」(안) 작성

○ 시행계획 심의·확정 (‘23.10.)

- 실무위원회 사전 검토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 확정

○ 국회 보고 및 고시 (‘23.11.)

- 확정된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관보 게재)



II

2023년 정책 추진방향

□ 북핵문제 해결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노력 지속

-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
- 동시에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 여건 조성 노력도 지속
 -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호응 시 즉각 추진토록 준비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 등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대응 추진

□ 북한주민 인권 증진 및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 북한주민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등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야당)와의 협력 강화
-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며, 취약계층 우선, 투명성 확보 등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대북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북한에 지속 촉구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응체계 및 기반 조성

-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 사회 협력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복지 사각지대 우려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보호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탈북민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자활 기반을 마련하고, 탈북청소년 통일 미래인재 육성 및 교육격차 해소
- 탈북민의 전문직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효율적·합리적인 교류협력 운영체계 개선 추진
-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인적교류·협력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관련 민간단체들과 소통 강화

□ 국내외 통일기반조성 노력 강화

-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공감대 확산
 -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및 교재 개발
 - 통일문화 행사 개최, 통일+센터 운영 등을 통한 국민들의 통일인식 제고
- 우리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및 통일공감대 확산
 - 통일국제협력대화, 국제행사 개최(「한반도국제포럼」 등), 통일 공공외교 확대 등

Ⅲ

2023년 중점 추진과제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조성
 -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정보공유, 공동기획·실행 등을 통한 대북 확장 억제 실효성 제고
 - 대북제재 강화, 신종 외화획득 수단 차단 등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공조 강화
 - 동시에, 유연하고 열린 입장의 견지 및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모색
- * 정부의 '3D' 접근: △(억제/ Deterrence)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핵 위협 억제 △(단념/ Dissuasion) 제재 강화 및 틈새 차단 △(대화/ Dialogue) 비핵화 협상 복귀 유도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실질적 평화정착 노력 지속
 -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을 위한 대북 협의방안 준비
-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요국·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 전개
 - 주요 양자·다자 외교 행사 계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지지 확보
 - 국내외 여론주도층·연구기관 등 대상 공론화(세미나, 포럼, 설명회 등) 추진 및 홍보 실시

1-2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 정치·군사 및 경제 분야 조치 이행계획(안) 마련
 - 정치·군사 분야: 평화체제 구축, 관계 정상화, 군비통제 등
 - 경제 분야: 초기조치, 5대 사업 등
 - * △(초기조치)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 △(5대 사업) 발전·송배전, 항만·공항, 농업기술, 병원·의료, 국제투자 금융지원
- 「담대한 구상」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등 의견수렴
-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담대한 구상」 세미나(7월, 11월) 개최, 장·차관 주요 정무활동 계기 홍보 등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 국제사회 내 북한의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무역 등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 실태 공론화 및 대응 방안 모색
- 최근 북한 정권의 주 수입원으로 대두한 사이버 분야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정부부처·민관 간 협력 확대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범부처 실무그룹 활용 및 민간분야 관여 지속

1-4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 우방국·관련 국제기구와의 공조하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 주도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도 병행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체제 유지 및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확보
 -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과 정보교류·소통·협조 강화
 - 미국 등 우방국과의 공조하 대북제재 이행 미진국 대상 교섭 및 역량강화 사업 실시
-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유도 및 우방국 등과 독자제재 연대 구축 등 지속 추진

2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2-1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

- 북한의 태도와 인식 변화 유도
 - 북한 도발 시 단호한 대응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실질적 대응 조치 추진
 - 남북관계 주요 계기 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북메시지 발신
-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 기반 마련 노력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 등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
 -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6.14.)
 - 남북 간 접촉, 회담 개최 등은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따라 책임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준비
- 남북 연락채널의 복원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 지속
 - 남북 연락채널 재개 노력 및 남북 간 중요현안 발생 시 상황관리 방안 마련
 - * 북한이 남북 간 통신채널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 지속(4.7.~)

2-2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 남북 간 재해재난 및 글로벌 기후·환경이슈 대응

- 북측에 댐 방류 시 사전통보 촉구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글로벌 기후·환경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및 분야별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그린데탕트' 관련 분야별 연구용역, 세미나 등 추진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9월 입법예고)
 -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촉신고 수리 거부 △과태료 부과 가능 사유 추가 등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훈령) 마련(9월)
 -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

-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 안내·홍보
-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8월)하여, 사후관리 강화

○ 민간단체·경협기업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 △남북사회문화 거버넌스 구축 △종교·학술·역사 등 사회문화 분야 민간단체들과 정례적인 민·관 소통 확대
- 경협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지자체의 교류협력 추진 관련 소통·관리 강화

- 「지자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통일부 예규)을 개정,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 추진 관련 사전·사후 협의 강화
-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폐지, 지자체 대북지원 보조금 사업 관련 정보 공유 강화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 순수 사회문화 분야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 역사·예술·종교 등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인적교류 및 협력사업은 지속 지원
- 체육 교류는 국제관례·대회규정에 따른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 대회 등 계기 시 대응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 민간교류 사업은 우리 국민 대상 전시·체험·홍보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 디지털 복원 사업(~'25년), 대국민 체험 서비스 제공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既 선정된 올림말 범위 내 「전자사전」·「종이사전」 편찬, 「종합백서」 발간 등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노력

-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등 「북한인권법」상 기구 정상 운영을 위한 국회(야당)와의 소통·협력 추진
-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 구성·운영(3.6. 통일부훈령 제정)

*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북한인권 증진 공감대 확산 및 정책과제 발굴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자문

- 북한인권 증진활동(△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국내외 공론화 △문화·예술 행사 등 연간 20억 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 활동 장려
- * 일반 공모를 통해 상반기 15개 단체 선정(18.55억 원), 하반기 추가 공모(1.45억 원)

○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인식 및 공감대 제고

-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3월)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실태 공유·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 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및 공감대 확산, 정책·연구과제 등 발굴

○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기록·보존·관리

-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전반적 인권 실태와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 검증 및 평가
- 북한인권기록의 연구·분석을 통한 북한 내 인권 취약점 발굴·개선
- 북한인권기록 기초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 유엔인권이사회(3월), 유엔총회(10~11월) 등 북한인권 논의 동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협력 및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실태조사 지원
- △미국 등 주요국과 협의 추진 △고위급 협의 계기 등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및 국제사회·시민사회 아웃리치 강화
- * △북한인권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INGO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 남북대화 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협의·추진

- 주요 계기 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북한 당국에 지속 촉구
- 이산가족찾기 신청 생존자 전원 생사확인, 대면·화상상봉 정례화 및 확대, 고향방문, 서신·영상편지 교환 등 협의·추진

○ 이산가족 교류 기반 조성

- 남북 간 교류에 대비,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1,000편 목표) 및 유전자 검사(1,000명 목표) 등 추진
- 북미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미국·캐나다 거주 이산가족 규모·현황 및 정책수요 파악

○ 이산가족 위로 및 국민 공감대 확산

-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개최(9.27.), 이산의 고통을 국가적으로 위로·기억하고 국민적 인식 제고
- * 「이산가족법」 개정('23.3.28.), △이산가족의 날(매년 추석 전전날) 법정기념일 지정 △국가지자체, 기념행사·홍보 실시
-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개최,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 설명 및 의견 청취

3-3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통일부장관 직속 남북자대책팀 신설, 지속적·체계적 대응 추진

-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방안 마련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가족·단체 소통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국제협력 강화

○ 남북대화 시 공식 의제화, 생사확인·송환 등 추진

-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남북회담 공식 의제로 북한 당국에 제기, 생사·소재·건강상태 확인, 상봉,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 추진

○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 △남북자·억류자 가족 및 단체 지원 △귀환 국군포로 예우 및 정착지원 △국립6.25전쟁남북자기념관 운영 등

○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강화

- 유사 입장국과의 고위급회담 공동성명 및 주요 국제회의 계기 결과문서 등에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문안 반영 추진

- △유엔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관련 문안 반영 △유엔북한인권 사무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강제실종실무그룹 등과 지속 협력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며, 취약계층 우선, 투명성 확보 등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유엔세계식량계획(WFP)·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대상 보건·영양 지원 추진 모색
 - 북한에 자연 재해 등 발생 시 긴급구호 실시
 - * 유엔안보리 제재 틀 내에서 진행,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안은 국제사회와 협의
 -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인도지원물자 분배투명성 확보 등 모니터링 강화 노력
- 인도지원 제도·추진체계 정비
 - 민간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북 지원사업자' 폐지 등 제도 정비
 -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 및 관리
 - 대북지원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민-관 소통 협력 지속, 민간분야 대북 인도협력 추진역량 강화 지원 및 사업 지속성 확보
 - 주요국 인도지원(개발협력) 기구 및 국제기구(WFP·UNICEF 등)와 중장기 협력 체계 구축 및 대북 인도주의 전략 파트너십 강화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탈북민 보호 및 지원 체계 확충
 -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1,200여 명) 상시 관리 및 모니터링 △「북한이탈 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구축(12월) 등 체계적 위기관리 추진

- 지역 중심의 정착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하나재단'(제도 지원)·'하나센터'(지역거점) 업무 재구조화 및 지자체 협력 확대

○ 취약계층 탈북민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 △탈북민 개인별 사례관리(진학·취업·의료·심리 등) △하나재단 -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트라우마 치료체계 마련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 및 생애 총액 한도 상향 조정 △취약군 대상 가산금 추가 신설 추진

○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자활 기반 확충

-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 신설, 상담·진단 → 일자리 준비(교육·멘토링) → 탐색(일자리 체험) 등 구직 준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탈북민 고용기업 대상 재정지원 및 모범사업주 지정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탈북민 고용 촉진

○ 탈북청소년 통일미래 인재 육성 및 교육격차 해소

- △대안학교·대안교육시설 등 운영 지원 △학교 내 통일전담교육사(교사 출신 탈북민) 배치 △장학금 지급 △디딤돌(예비대학) 사업 등 추진

○ 위기 탈북민 중심 법률지원제도 운영

- 위기 탈북민 대상 지원번호인(66명 위축)을 1:1 매칭하여 중장기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제공 및 법률교육 실시
-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담당변호사 40명을 배정(센터별 1~3명)하여 관할 지역 거주 탈북민 대상 상시 법률상담 제공

○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 남북주민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탈북민 이해 증진을 위해 △남북주민 봉사단 △남북청소년합창단 △남북주민 공감행사 등 운영
- △탈북민 단체와의 소통·협업 추진 △탈북민 단체 상호 간 소통 채널 및 탈북민 지역공동체 구축 지원

4 북한 정보분석 강화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

- 주요 정치행사, 군사 도발 등 계기 시 신속한 분석·보고 체계 마련
 - 당대회, 당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군사 도발 등 현안 발생 시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연계, 정보분석 강화
- 정치·군사·대남·대외 등 분야별로 심층 분석을 토대로 기획보고 활성화
 - 정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획보고서 정례적으로 작성
 - △경제성장률, 물가, 환율, 대외교역 등 주요 경제지표 △농업, 전력, 건설, 금속·화학공업 등 주요 산업별 분석 강화
- 북한 경제 실상 및 동향 파악을 위한 객관적 지표 개발 및 발굴 추진
 - 거시경제, 농업, 산업, 대외교역, 시장 등 북한 경제를 망라하는 정성·정량 지표를 발굴하여 북한 경제 전반 평가
 - 고해상 위성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북한 경제 지표 개발 추진
- 위성영상 수집 분석 등 적시적·효율적 분석체계 강화
 - 유관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한 위성정보 공유 확대

4-2 북한정보 네트워크 정비

- 국내외 북한 분석 전문가 간 정례 교류협의체 구성·운영
 - 국내연구기관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추진

○ 유관기관 간 정례적 정보공유 강화

- 업무협약(MOU) 체결 및 분야별 상시적 정보공유 네트워크 체계 구축

○ 탈북민 등 인적 자원 활용 확대

- 탈북민 전문가와의 정례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

○ 정례적 경제 상황 진단·평가 세미나 개최

- △제재 회피 역량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 등 주제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주제별 토의 진행

4-3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 빅데이터 기반 「북한정보포털」을 개편하여, 북한자료의 대국민 접근성·편의성 제고

- △데이터 정비 및 자료 현행화 △분석모델 고도화 △사용환경 개선 △검색, 챗봇 등 사용자 편의 기능 강화 △업로드 자료 현행화 등 시스템 구축(연내)

○ 통일·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 추진

- 기본설계('22.9.~'23.3.), 실시설계('23.6.~), 연말 착공 등을 목표로 추진

*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규모: 8,463㎡(2,560평) △총사업비: 489억

○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수집 사업」 공개 보고서 발간

- 탈북민 대상 10년간('13.~'22.) 수집 자료 분야별 정리, 대국민 공개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5-1

새로운 통일미래비전 정립

○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통일정책 개발 및 공감대 확산 기능 등을 수행하는 통일부장관 직속 민간 자문기구로서,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35명 이내로 구성(5개 분과 설치)
 - * 5개 분과: 정치군사분과, 경제분과, 사회문화분과, 인권인도분과, 국제협력분과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2월) 및 운영(3월~)

○ 통일미래 청사진 및 통일·대북정책의 방향 모색

-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대북정책의 방향 검토(3월~)
 -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분기) △분과회의 개최(수시) △특별위원회 회의 및 자문(계기 시)
-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폭넓은 국내외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 추진(5월~)
 - * △국내 의견수렴(5~7월) △국제협력대화(6~11월) △공감대 확산 사업(하반기)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추진

- 통일방안에 대한 관심·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문가 학술대회(6월) 및 국민 대상 공론화 추진(11월)
 - * 「민족공동체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 (발표)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계기('94.8.15.)
 - (내용) 자주·평화·민주 원칙 하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順 진행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 (가칭)「통일기반조성기본법」 제정(안) 마련 추진

- (가칭)「통일기반조성기본법」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4~7월)
 - * △제정취지·필요성, 기대효과 △유사법제 사례분석 △제정안 마련 △관련 법률 정비 등 후속조치 방안 등 연구
-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 검토, 제정 절차 착수

○ '민간 기부금' 관련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추진

- 모집된 민간 기부금을 기탁자가 지정한 시기·목적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 법제처 심사(6월) → 국무회의(7월) → 국회 송부(7월)

○ 통일법제 인재 양성 및 연구 생태계 고도화

- 통일에 대비,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유관부처 공무원 등을 통일법제 전문가로 양성하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10~11월)
 - * 대한변협과 공동주관, '14년 아카데미 개설 이래 총 12기 운영, 622명 수료
- 통일 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정기 발행(연 4회)

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 북한 이해 제고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자문회의 운영

- 분야별 탈북민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정기(수시) 회의 개최(6~12월)

○ 통일문화공감행사 등 계기 시 국내외 북한 실상 전파

- △통일문화공감행사(5월 광화문, 9월 목포, 10월 부산국제영화제) △통일교육주간(5.22.~28.) △통일교육 학술대회 △유관단체·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실시
- 북한 실상 경험 탈북민들을 통한 대국민 설명회 개최·지원(계기 시)
- 「2023 북한인권 국제대회」 개최(12월)

○ 젊은 세대를 위한 북한 실상 콘텐츠 개발·활용

- △도서·영상·e러닝 콘텐츠 △북한 실상 관련 웹툰·게임 △탈북민 수기집 등 다양한 형태의 북한 실상 홍보 콘텐츠 기획 추진
- 특히, 2030 세대 등 젊은층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글램핑·영화·음악 등 생활밀착형 소재 적극 발굴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동영상(쇼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북한 실상 학술행사 지원 △해외 신진학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등 국내외 북한 실상 연구자 지원

○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남북한 공통지표 확충

- 북한통계 확충을 위해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표 23종 (고령인구, 사업체 등) 개발(5~12월)
- 북한통계 개선·개발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강화
 - *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북한통계 지원사업 추진기구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및 교재(지침서, 기본교재 등) 발간(3월)
- 메타버스, 증강(AR)·혼합(MR)·가상현실(VR) 등 에듀테크(EduTech) 기반 디지털 통일교육 실시(연중)
- 북한 실상 이해, 이산가족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웹툰 제작(6~11월)

○ 미래세대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환경 조성

- 일선학교 대상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4~12월) 및 학교 현장의 수요와 자율성을 반영한 '학교통일 체험교육'(5~11월) 운영

- 학교통일교육의 지역 거점학교를 육성하여 참여·체험형 학습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내 학교 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 총 32개 운영('23년 지정 20개교(1년차)/ '22년 지정 12개교(2년차))

- 초·중·고 청소년 대상 일반연수 내실화(3~11월), 도서·벽지·접경지역 청소년 대상 통일미래 체험기회 제공(5월~), 통일 미래체험관 콘텐츠 개선 및 기능보강

- 대학생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 거점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 '23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총 9개교 운영(경기대, 대전대, 국민대, 이화여대, 충북대, 전북대, 동아대, 강릉원주대, 서울교대)

○ 권역별 「통일+센터」 단계적 설치·운영

- △호남센터 개관(9월) △강원센터 착공(3월) △경기·충청센터 설계용역(5월) 등 추진

- 「통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5~7월, 연구용역) 및 지역별 서비스 수준·편차 해소를 위한 표준화(5~9월, 연구용역) 추진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및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 확산

- 주요 고위급 회의 계기 결과 문서에 우리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반영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고위급·실무급, 1.5트랙~2트랙 대화 강화

-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중국, 러시아 등과도 소통 채널 유지 및 대응조치 추진

- 한반도국제포럼(KGF, 8월) 등 국제회의를 통한 한반도 통일 담론 확산

- 주한외교단 및 해외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우리 통일비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대 노력 지속

○ 통일·통합 및 개혁·개방 경험국과의 소통·교류 확대

- 분야별 독일 통일 경험 공유를 위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5월)
- 베트남 통합 및 개혁·개방 사례 공유를 위한 △한 - 베트남 포럼 개최(5월)
△베트남 통합 관련 사료수집 등 추진

○ 해외 전문가 양성 및 한반도 통일 공감대 확산 등 통일 공공외교 확대

- 해외 북한·통일 분야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 육성
및 지한파 네트워크 저변 확대
- 문화사업을 통한 재외동포 대상 통일 공감대 형성과 함께 민주평통 등을
통한 동포사회 기반 공공외교 협력 강화
- 해외 오피니언 리더, 2030세대 등 공공외교 대상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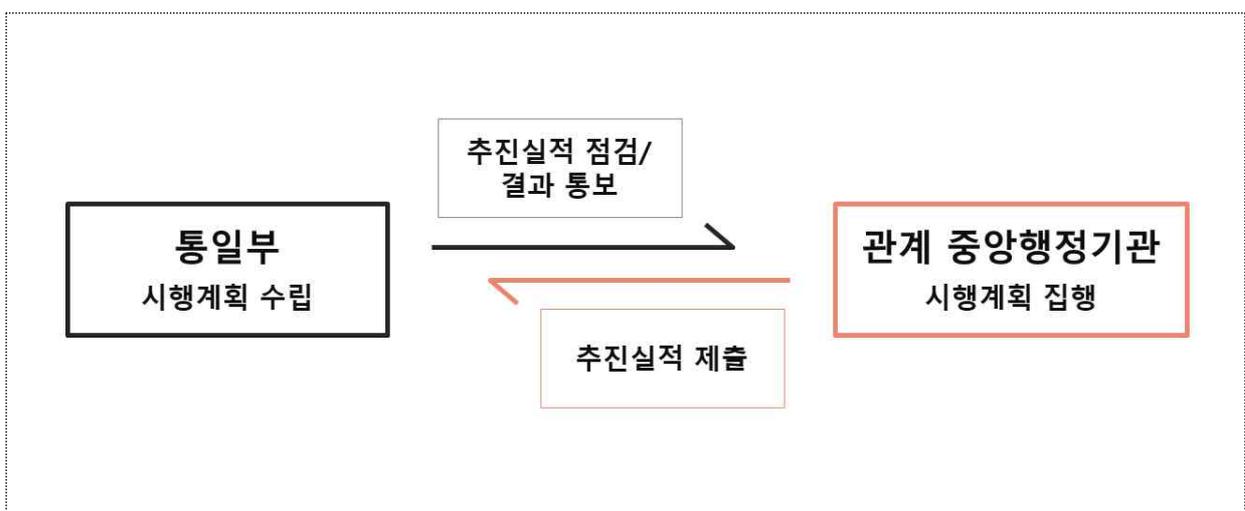
V

추진체계 및 소요자원

1

추진 체계

- (시행계획 집행) 시행계획 확정 후 과제별로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해당사업을 집행, 통일부는 집행을 총괄
- (추진실적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사업 추진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통일부에 제출
 - 미이행 사업이 있는 경우 사유 및 대책 포함
- (추진실적 점검·관리) 통일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
 -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점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추진실적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2

소요 자원

- 「2023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소요 자원은 남북협력기금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에서 사용
 -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7억 원 △남북사회문화교류, 215억 원 △인도적 문제해결, 7,300억 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4,549억 원 등 총 1조 2,101억 원 편성
 - * 【붙임 1】 2023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 2023년도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통일부 일반예산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158억 원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43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884억 원 △통일교육추진 152억 원 등 총 1,606억 원 편성
 - * 【붙임 2】 2023년 통일부 일반예산 편성 내역
 - 기타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반예산 사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내 용		예 산
1. 통일정책		3,660
① 통일기반조성		3,660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660
2. 남북사회문화교류		21,520
① 남북사회문화교류		21,520
	사회문화교류지원	21,520
3. 인도적 문제해결		730,004
① 이산가족 교류지원		18,027
	이산가족 교류지원	18,027
② 대북인도적지원		711,977
	구호지원	107,008
	민생협력지원	604,969
4.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454,934
①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437,593
	경제교류협력보험	4,275
	경협기반(무상)	231,266
	경협기반(응자)	180,025
	경제교류협력대출	10,000
	DMZ 평화적 이용	12,027
② 개성공단 조성		17,341
	개성공단 운영 대출	8,282
	개성공단 기반조성	9,059
합 계		1,210,118

(단위 : 백만 원)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용	예 산
1. 평화통일기반조성	통일정책추진	3,878
	국내통일기반조성	8,735
	국제통일기반조성	3,161
2.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360
	정세분석 역량 강화	1,846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2,068
3. 북한자료센터 운영	북한자료센터 운영	1,307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10,647
4.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42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32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436
5.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484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722
	북한인권재단 운영	475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400
6. 전시남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6.25전쟁남북자기념관 운영	1,473
7.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32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7,061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54
8.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20,981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2,854
9.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224
10. 개성공단 사업지원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592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291
11.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1,010
12. 남북회담 추진	남북회담 추진	354
13. 남북회담본부 운영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2,162
14. 통일교육 추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70
	학교통일교육 강화	4,895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4,728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509
15.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502
16. 통일업무 R&D	정책연구개발(R&D)	371
17. 통일업무지원	통일업무지원	467
18. 대북활동지원	통일정책추진활동	1,947
19. 통일정보화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1,986
20. 본부 전산운영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588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2,870
합 계		160,675

붙임 3

과제별 소관 부처(청) 현황

과 제 명		소관 부처·청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외교부, 통일부
	1-2.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통일부, 외교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등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외교부
	1-4.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외교부, 통일부
2.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2-1.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	통일부
	2-2.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통일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등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통일부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부, 문체부, 방통위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통일부
	3-3.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통일부, 국방부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통일부, 외교부, 농식품부, 질병청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통일부, 교육부, 법무부, 지자체
4. 북한 정보분석 강화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	통일부
	4-2. 북한정보 네트워크 정비	통일부
	4-3.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통일부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5-1. 새로운 통일미래비전 정립	통일부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통일부, 법무부
	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통일부, 통계청, 지자체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통일부, 교육부, 법무부, 지자체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통일부, 외교부